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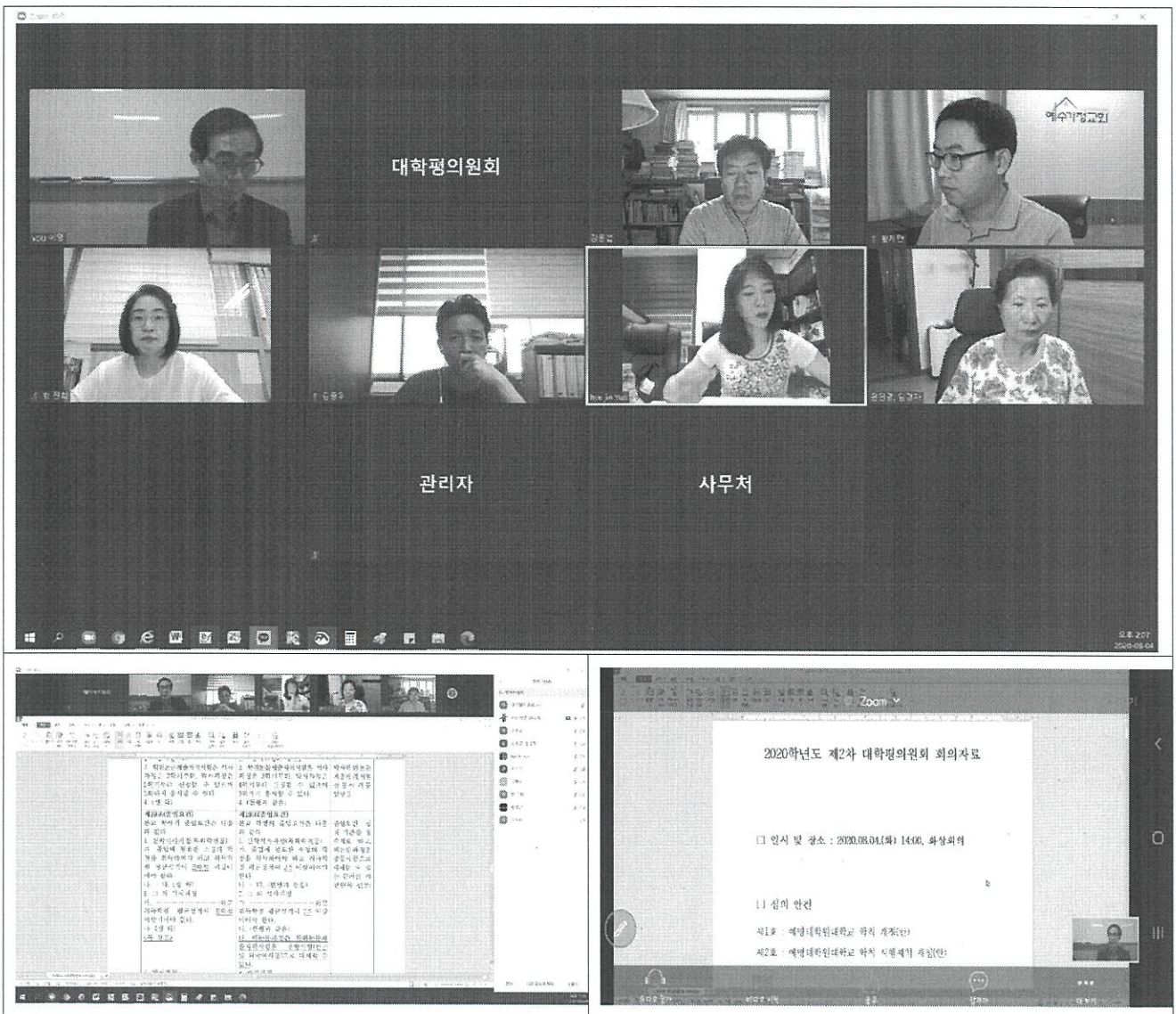
#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의원정수	재적의원	참석의원
11	11	7

I. 개최일 및 장소: 2020. 08. 04.(화) 14:00, 화상회의

참석의원: (교직원) 윤혜진, 강응섭, 정영준, 빙진희  
(학생) 김종우, 황제만, (동문) 임경자

불참의원: (학생) 황선정, (동문) 이현규, (외부) 윤경화, 김일남



대표 간서명	윤혜진 <i>윤혜진</i>	황제만 <i>황제만</i>	정영준 <i>정영준</i>
--------	----------------	----------------	----------------

II. 개회 선언 : 재적의원 11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III. 심의 및 자문 안건

[심의] 제1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제2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자문] 제1호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IV. 회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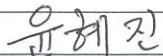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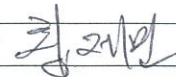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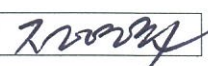
- 윤혜진 의장 : 금일 심의 안건 중 제1호 학칙 및 제2호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은 교직원 대상으로 사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학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설명하다.
- 윤혜진 의장 : 심의 제1호 및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 개정안을 수합하여 직접 검토한 정영준 사무처장(의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정영준 사무처장 : 배포된 회의자료와 같이 안건에 대해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 신규 조문 대비표 내용을 설명하다. (회의자료 심의 제1호~제2호 안건)

가. 심의 제1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개정 이유] 법령에 따라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 명시하고 각 과정의 수료 학점 기준 조정과 졸업사정 기구를 변경하며, 학위 종류를 통합하고 세부 학위명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제 학사 운영에 맞게 학칙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회의자료 제1호 안건)

< 주요 골자 >

- 가.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제6조)에 따라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함(제9조의3 신설)
- 나. 박사과정 수료 기준을 명시함(제26조 제2항 신설)
- 다. 각 과정의 수료 학점 기준을 조정함(제27조 제2항)
- 라. 졸업사정에 수료사정을 추가함(제27조의2)
- 마. 학사경고 성적 기준을 변경함(D 미만 → 1.5 미만)(제27조의3)
- 바. 학위 종류를 통합하고 세부 학위명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제38조 제2항)

대표 간서명	윤혜진 	황제만 	정영준 
--------	---	--	---

나. 심의 제2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개정 이유] 재수강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 시기를 앞당기며, 학위논문제출자격과 논문심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학위 논문 제출 및 심사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회의자료 제2호 안건)

< 주요 골자 >

- 가. 재수강 허용 근거를 마련함(제7조 제5호)
- 나.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시기를 '5학기부터'에서 '4학기부터'로 앞당김 (제18조)
- 다. 졸업요건 성적 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하고, 비논문과정은 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조)
- 라. 교수학습세미나 이수 요건을 폐지함(제19조의2 삭제)
- 마. 학위논문제출자격으로 이수해야 할 연구지도 학기 수를 명확히 하고, 시험의 종류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변경함(제22조)
- 바. 논문심사 절차를 세분화(예비심사, 본심사, 최종심사)하고 방법을 명확히 함 (제25조의2)

- 윤희진 의장 : 안건 설명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다.
- 임경자 의원 : 신학대학원으로 개교된 예명대학원대학교에서 학칙 시행세칙 제22조 (논문제출자격) 제1호에서 성경고사를 제외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윤희진 의장 : 성경고사는 신학과 졸업고사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서는 제외하고 공통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 윤희진 의장 : 안건 제1호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제2호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다고 하여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찬성 7명: 윤희진, 강응섭, 정영준, 방진희, 김종우, 황제만, 임경자, 반대 0명)

나. 자문 제1호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 윤희진 의장 : 자문 제1호 안건인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정영준 사무처장(의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대표 간서명	윤희진 	황제만 	정영준 
--------	---	--	---

- 정영준 사무처장 : 배포된 회의자료와 같이 안전에 대해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및 자금예산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액과 증감사유 등을 순서대로 설명하다. (회의자료 자문 제1호 안전)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

예명대학원대학교

(단위:천원)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관 별	2020년 1차 추경 예산	2020년 본 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비고	관 별	2020년 1차 추경 예산	2020년 본 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비고
5100 등록금수입	1,350,827	1,684,137	- 333,310	63.61%		4100 보수	1,020,200	1,051,000	- 30,800	48.04%	
5200 전입및기부수입	325,000	240,500	84,500	15.30%		4200 관리운영비	437,860	410,880	27,000	20.62%	
5300 교육부대수입	61,020	55,500	5,520	2.87%		4300 연구학생활비	477,600	555,900	- 78,300	22.49%	
5400 교육외수입	1,700	1,600	100	0.08%		4400 교육외비용	15,000	6,000	10,000	0.75%	
1300 고정자산매각수입	-	-	-	0.00%		4500 예비비	10,560	13,957	- 3,377	0.5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85,013	132,000	253,013	18.13%		1200 투자및기타자산지출	-	-	-	0.00%	
						1300 고정자산매입지출	105,000	76,000	29,000	4.94%	
						미사용자기이월금	56,300	-	56,300	2.65%	
계	2,123,560	2,113,737	9,823	100.00%		계	2,123,560	2,113,737	9,82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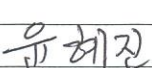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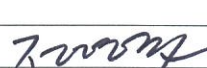
- 윤혜진 의장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토록 했으나 전체 의원이 증감액과 증감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질의사항이 없다고 하여 해당 안전을 원안대로 자문하였음을 선언하다. (찬성 7명: 윤혜진, 강응섭, 정영준, 방진희, 김종우, 황제만, 임경자, 반대 0명)

## V. 폐 회

의장이 논의결과 회의록에 간서명할 위원으로 윤혜진 의장, 황제만 부의장, 정영준 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언하고,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

2020년 8월 4일

대표 간서명	윤혜진		황제만		정영준	
--------	-----	---	-----	--	-----	---

의 장 윤혜진 윤혜진

부의장 황제만 황제만

의 원 강응섭 강응섭

의 원 정영준 정영준

의 원 방진희 방진희

의 원 김종우 김종우

의 원 임경자 임경자

(붙임자료)

##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자료

□ 일시 및 장소 : 2020.08.04.(화) 14:00, 화상회의

□ 심의 안건

제1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제2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자문 안건

제1호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

[제1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 개정 사유

- 법령에 따라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 명시하고 각 과정의 수료 학점 기준 조정과 졸업사정 기구를 변경하며, 학위 종류를 통합하고 세부 학위명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제 학사 운영에 맞게 학칙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제6조)에 따라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명시함(제9조의3 신설)
- 박사과정 수료 기준을 명시함(제26조 제2항 신설)
- 각 과정의 수료 학점 기준을 조정함(제27조 제2항)
- 졸업사정에 수료사정을 추가함(제27조의2)
- 학사경고 성적 기준을 변경함(D 미만→1.5 미만, 제27조의3)
- 학위 종류를 통합하고 세부 학위명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38조 제2항)

※ 2020학년도 제2차 대학원위원회 심의(2020.07.27.)

- 재적위원 5명 중 4명 참석,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lt;조 신설&gt;</p>	<p><b>제9조의3(교원의 교수시간)</b>  <u>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          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등 총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          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법령에 따라          교원의 교수          시간을 학칙          에 명시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1항)</p>
<p><b>제26조(수료)</b>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lt;항 신설&gt;</p>	<p><b>제26조(수료)</b>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② <u>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제6조          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마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과정 수료가 된다.</u></p>	<p>박사과정 수          료 기준 명시          (제2항 신설)</p>
<p><b>제27조(성적관리)</b>          ① (생 략)          ② 학점인정은 수강과목별 출          석율이 강의 실시시간의 3분          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D          등급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각 과정의 수료 사          정 시 전체 학점 평균은 신학          석사과정 외의 경우 C등급,          신학석사와 박사의 경우 A등급          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⑤ 졸업예정자는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u>교수회의</u>에서 졸업          사정을 통과하여야 한다.</p>	<p><b>제27조(성적관리)</b>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점인정은 수강과목별 출          석률이 강의 실시시간의 3분          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이 D          등급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각 과정의 수료 사          정 시 전체 학점 평균은 석사          과정의 경우 2.5 이상, 박사과          정의 경우 3.0 이상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졸업예정자는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u>교수회</u>에서 졸업사          정을 통과하여야 한다.</p>	<p>각 과정의 수          료 학점 기준          조정          교수회의를          교수회로 변경</p>
<p><b>제27조의2(졸업사정)</b>          졸업사정은 <u>년 2회</u> 실시한다.</p>	<p><b>제27조의2(수료사정 및 졸업사정)</b>  <u>수료사정 및 졸업사정은 연 2          회</u> 실시한다.</p>	<p>수료사정 추가          (조 제목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b>제27조의3(학사경고)</b>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u>D</u>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p>	<p><b>제27조의3(학사경고)</b>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u>1.5</u>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1회 받게 되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p>	<p>학사경고 성적 기준 변경  (D미만일 경우 평량 평균이 0.5 미만이 되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생이 없음  1.5는 C°에 해당되며 백분위 점수일 경우 70점 미만에 해당됨)</p>
<p><b>제38조(학위수여 및 명예졸업)</b>  ① (생략)  ②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1. 석사과정 : <u>신학석사·사회복지학석사</u>  2. 박사과정 : <u>사회복지학박사·철학박사</u>  <u>&lt;호 신설&gt;</u>  ③ ~ ④ (생략)</p>	<p><b>제38조(학위수여 및 명예졸업)</b>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1. 석사과정 : <u>신학석사(M.Div., Th.M.)·문학석사(M.A.)</u>  2. 박사과정 : <u>철학박사(Ph.D.)</u>  3. 제1호와 제2호의 세부 학위명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p>	<p>학위 종류를 통합하고 세부 학위명은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둠  (영문학위명 표기)</p>

## [제2호 안건]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 개정 사유

- 재수강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 시험 신청시기를 앞당기며, 학위논문제출자격과 논문심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학위 논문 제출 및 심사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 □ 주요 개정 내용

- 재수강 허용 근거를 마련함(제7조 제5호)
-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신청시기를 ‘5학기부터’ 에서 ‘4학기부터’ 로 앞당김(제18조)
- 졸업요건 성적 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하고, 비논문과정은 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조)
- 교수학습세미나 이수 요건을 폐지함(제19조의2 삭제)
- 학위논문제출자격으로 이수해야 할 연구 지도 학기 수를 명확히 하고, 시험의 종류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변경함(제22조)
- 논문심사 절차를 세분화(예비심사, 본심사, 최종심사)하고 방법을 명확히 함(제25조의2)

※ 2020학년도 제2차 대학원위원회 심의(2020.07.27.)

- 재적위원 5명 중 4명 참석,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

□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7조(수강신청) 1. ~ 4. (생 략) &lt;호 신설&gt;</p>	<p>제7조(수강신청) 1. ~ 4. (현행과 같음) 5. 이수한 과목의 평점이 졸업 요건 평균성적 이하인 경우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p>	<p>재수강 허용 근거 신설</p>
<p>제18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생 략) 1. ~ 2. (생 략) 3.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석사 과정은 3학기부터, 박사과정은 5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4. (생 략)</p>	<p>제18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석사 과정은 3학기부터, 박사과정은 4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p>	<p>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신청 시기를 앞당김</p>
<p>제19조(졸업요건) 본교 학생의 졸업요건은 다음 과 같다. 1. 신학석사과정(목회학전공) 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 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취득학 점 평균성적이 <u>B학점</u> 이상이 어야 한다. 나. ~ 다. (생 략) 2. 그 외 석사과정 가. -----하고 취득학점 평균성적이 <u>B학점</u> 이상이어야 한다. 나. (생 략) &lt;목 신설&gt;  3. 박사과정 가. -----하고 통합 평균성적이 <u>A학점(기독교 사회복지학전공은 B학점)</u>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생 략)</p>	<p>제19조(졸업요건) 본교 학생의 졸업요건은 다음 과 같다. 1. 신학석사과정(목회학전공) 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 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취득학 점 평균성적이 <u>2.5</u> 이상이어야 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2. 그 외 석사과정 가. -----하고 취득학점 평균성적이 <u>2.5</u> 이상 이어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비논문과정은 학위논문제 출자격시험을 종합시험(전공 및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박사과정 가. -----하고 통합 평균성적이 <u>3.0</u> 이상이어 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p>	<p>졸업요건 성 적 기준을 점 수제로 하고, 비논문과정은 종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 는 근거를 마 련함(목 신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9조의2(교수학습세미나) 졸업하기 전 교수경험을 쌓아 교수능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교수학습세미나(Teaching Learning Seminar)를 이수하여 야 한다.</p>	<p>제19조의2(교수학습세미나) &lt;삭제&gt;</p>	
<p>제22조(논문제출자격) 본교의 학위과정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u>성경고사(신학대학 졸업자는 제외)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 하여야 함</u> 2. <u>6학기 이상(석사는 4학기 이상)을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u> 3. <u>논문개요를 제출한 자</u></p>	<p>제22조(논문제출자격) 본교의 학위과정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u>외국어 시험 및 학위논문제 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u> 2. <u>6학기 이상(석사는 4학기 이상)을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석사는 1학기 이상) 연구 지도를 받은 자 또는 연구 지 도를 받고 있는 자</u> 3. <u>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u></p>	<p>합격해야 할 시험에서 성 경고사를 제 외하고 학위 논문제출자격 시험 합격을 추가함 이수해야 할 연구 지도 학기 수를 명확히 함 논문개요를 논문연구계획 서로 변경함</p>
<p>제25조의2(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제1차 <u>비공개심 사·문서심사</u>와 제2차 <u>공개심 사·면담심사</u>로 구성된다. 각 각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이의 가 있을 때 다음 단계로 진행 되지 못한다. ② 제1차 <u>비공개심사 문서심사</u> <u>가 통과되면</u> 심사위원은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lt;항 신설&gt;</p>	<p>제25조의2(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제1차 <u>예비심사 (내부심사, 문서 또는 면담심 사), 제2차 본심사(문서 또는 면담심사), 제3차 최종심사(면 담심사)</u>로 구성된다. 각각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이의가 있 을 때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한다. ② 제1차 <u>예비심사(내부심사, 문서 또는 면담심사)가 통과되 면</u> 심사위원은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③ 제2차 <u>본심사(문서 또는 면 담심사)가 통과되면</u> 심사위원 은 본심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면담심사 는 논문 제출자, 지도교수, 심 사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한다.</p>	<p>논문심사 절 차를 세분화 하고 방법을 명확히 함 (예비심사 추가)</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③ 제2차 공개심사 면담심사는 논문 제출자, 지도교수, 심사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한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학위논문 인준서에 <u>도장으로 날인하여</u> 이를 증명한다. 단, 조건부로 통과된 논문은 그 내용을 수정한 후 지도교수에게 확인받은 다음 제본한다.</p>	<p>④ 제3차 최종심사(면담심사)는 논문 제출자, 지도교수, 심사위원이 참석하여 진행한다. 이 과정이 통과되면 학위논문 인준서에 <u>날인하여</u> 이를 증명한다. 단, 조건부로 통과된 논문은 그 내용을 수정한 후 지도교수에게 확인받은 다음 제본한다.</p>	<p>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구 수정함</p>

(자문 안건)

[제1호 안건]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총칙

1.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수입, 지출 총 예산은 2,123,560천원으로 한다.  
 가. 등록금회계 수입, 지출 예산은 1,429,258천원으로 한다.  
 나. 비등록금회계 수입, 지출 예산은 694,302천원으로 한다.
2. 주요사업계획  
 가.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원격수업 도입 확대 및 콘텐츠 질관리 개선  
 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내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 확대  
 다. 학사정보관리시스템 등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라. 전공별 콜로키움 행사를 통한 연구·학술대회 유치
3.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상호 전용한다.
4. 교비회계의 수입과 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자금예산서와 같다.

□ 총괄표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예산 총괄표

예명대학원대학교

(단위:천원)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관 별	2020년 1차 추경 예산	2020년 본 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비고	관 별	2020년 1차 추경 예산	2020년 본 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비고
5100 등록금수입	1,350,827	1,684,137	333,310	63.61%		4100 보수	1,020,200	1,051,000	30,800	48.04%	
5200 전입및기부수입	325,000	240,500	84,500	15.30%		4200 관리운영비	437,880	410,880	27,000	20.62%	
5300 교육부대수입	61,020	55,500	5,520	2.87%		4300 연구학생경비	477,600	555,900	78,300	22.49%	
5400 교육외수입	1,700	1,600	100	0.08%		4400 교육외비용	16,000	6,000	10,000	0.75%	
1300 고정자산매각수입	-	-	-	0.00%		4600 예비비	10,580	13,957	3,377	0.5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85,013	132,000	253,013	18.13%		1200 투자및기타자산지출	-	-	-	0.00%	
						1300 고정자산매입지출	105,000	75,000	29,000	4.94%	
						미사용자기이월금	56,300	-	56,300	2.65%	
계	2,123,560	2,113,737	9,823	100.00%		계	2,123,560	2,113,737	9,823	100.00%	

□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서

[수 입]

2020.03.01. ~ 2021.02.28. (단위: 원)

과 목		2020회계연도 1차 추경 예산 (A)			2020회계연도 본 예산(B)	증감 (A-B=C)
관	항	등록금	비등록금	합계		
<b>5100</b>	<b>등록금수입</b>	<b>1,350,827,000</b>	-	<b>1,350,827,000</b>	<b>1,684,137,000</b>	- <b>333,310,000</b>
	5110 등록금수입	1,350,827,000	-	1,350,827,000	1,671,137,000	- 320,310,000
	5120 수강료수입	-	-	-	13,000,000	- 13,000,000
<b>5200</b>	<b>전입 및 기부금 수입</b>	-	<b>325,000,000</b>	<b>325,000,000</b>	<b>240,500,000</b>	<b>84,500,000</b>
	5210 전입금수입	-	146,000,000	146,000,000	143,500,000	2,500,000
	5220 기부금수입	-	179,000,000	179,000,000	97,000,000	82,000,000
<b>5300</b>	<b>교육부대수입</b>	-	<b>61,020,000</b>	<b>61,020,000</b>	<b>55,500,000</b>	<b>5,520,000</b>
	5310 입시수수료 수입	-	20,000,000	20,000,000	20,000,000	-
	5320 증명·사용료수입	-	2,500,000	2,500,000	2,500,000	-
	5330 기타교육부대수입	-	38,520,000	38,520,000	33,000,000	5,520,000
<b>5400</b>	<b>교육외수입</b>	<b>1,500,000</b>	<b>200,000</b>	<b>1,700,000</b>	<b>1,600,000</b>	<b>100,000</b>
	5410 예금이자수입	500,000	100,000	600,000	500,000	100,000
	5420 기타교육외 수입	1,000,000	100,000	1,100,000	1,100,000	-
<b>미사용전기미결제</b>		<b>76,931,016</b>	<b>308,082,293</b>	<b>385,013,309</b>	<b>132,000,000</b>	<b>253,013,309</b>
	1100 기초 유동자산	399,856,489	318,659,663	718,516,152	132,000,000	586,516,152
	2100 기초 유동부채	322,925,473	10,577,370	333,502,843	-	333,502,843
<b>자금수입 총계</b>		<b>1,429,258,016</b>	<b>694,302,293</b>	<b>2,123,560,309</b>	<b>2,113,737,000</b>	<b>9,823,309</b>

[지 출]

(단위 : 원)

과 목		2020회계연도 1차 추경 예산 (A)			2020회계연도 본 예산(B)	증감 (A-B=C)
관	항	등록금	비등록금	합계		
<b>4100</b>	<b>보수</b>	<b>934,200,000</b>	<b>86,000,000</b>	<b>1,020,200,000</b>	<b>1,051,000,000</b>	- <b>30,800,000</b>
	4110 교원보수	618,200,000	41,000,000	659,200,000	675,000,000	- 15,800,000
	4120 직원보수	316,000,000	45,000,000	361,000,000	376,000,000	- 15,000,000
<b>4200</b>	<b>관리운영비</b>	<b>72,300,000</b>	<b>365,580,000</b>	<b>437,880,000</b>	<b>410,880,000</b>	<b>27,000,000</b>
	4210 시설관리비	34,700,000	119,980,000	154,680,000	181,880,000	- 27,200,000
	4220 일반관리비	6,100,000	46,500,000	52,600,000	59,400,000	- 6,800,000
	4230 운영비	31,500,000	199,100,000	230,600,000	169,600,000	61,000,000
<b>4300</b>	<b>연구·학생경비</b>	<b>403,500,000</b>	<b>74,100,000</b>	<b>477,600,000</b>	<b>555,900,000</b>	- <b>78,300,000</b>
	4310 연구비	-	5,000,000	5,000,000	6,200,000	- 1,200,000
	4320 학생경비	403,500,000	49,100,000	452,600,000	529,700,000	- 77,100,000
	4330 입시관리비	-	20,000,000	20,000,000	20,000,000	-
<b>4400</b>	<b>교육외비용</b>	<b>15,000,000</b>	<b>1,000,000</b>	<b>16,000,000</b>	<b>6,000,000</b>	<b>10,000,000</b>
	4420 기타교육외비용	15,000,000	1,000,000	16,000,000	6,000,000	10,000,000
<b>4600</b>	<b>예비비</b>	<b>4,258,016</b>	<b>6,322,293</b>	<b>10,580,309</b>	<b>13,957,000</b>	- <b>3,376,691</b>
	4610 예비비	4,258,016	6,322,293	10,580,309	13,957,000	- 3,376,691
<b>1300</b>	<b>고정자산매입지출</b>	-	<b>105,000,000</b>	<b>105,000,000</b>	<b>76,000,000</b>	<b>29,000,000</b>
	1310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	105,000,000	105,000,000	76,000,000	29,000,000
<b>미사용차기미결제</b>	<b>차기미결제</b>	-	<b>56,300,000</b>	<b>56,300,000</b>	-	<b>56,300,000</b>
<b>자금지출 총계</b>		<b>1,429,258,016</b>	<b>694,302,293</b>	<b>2,123,560,309</b>	<b>2,113,737,000</b>	<b>9,823,309</b>